2020년도 한밭대학교 대학(원)생 폭력 예방교육 운영계획(안)

2020. 8.

한 밭 대 학 교

학생상담센터 양성평등상담실

2020년 대학(원)생 폭력 예방교육 운영계획(안)

1 배 경

□ 각급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**2대 폭력 예방교육**(성폭력·가정폭력)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 제출 필요

< 2대 폭력 예방교육 법령 근거(상세내용 : 참고1) **>**

성폭력	가정폭력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	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

2 교육 개요

□ **(대상)** 한밭대학교 **재학생**(대학원생 포함)

○ **(단과대학별)** 학부·대학원 2020학년 재학생

▸ 단과대학별 개설된 과목 이수(2시간)

1분반 : 공과대학	5분반 : 경상대학
2분반 : 정보기술대학	6분반 : 미래산업융합대학
3분반 : 건설환경조형대학	7분반 : 모든 대학원 재학생
4분반 : 인문사회대학	

□ **(교육기간)** 2020. 09. 01. ~ 11. 30.

□ **(이수기준)** e-러닝에 자동탑재 되어 있는 과목을 끝까지 수강 시 자동 이수

※ 개인 수강신청 과목에 탑재(2020년 4월 대학공시 명단 기준)하였으며, 탑재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학생상담센터로 연락바람 **※ 이수 완료시 C+U200 1 unit 부여**

□ **(교육방법)** 코로나19 관련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**사이버 교육**으로 진행

▸ 한밭대학교 이러닝 캠퍼스 (http://cyber.hanbat.ac.kr/)

- (이수 과목) ① 성폭력, 가정폭력 법정의무 예방 교육(1~7분반)

□ **(기타문의)** 학생상담센터 양성평등상담실 유민희 (☏ 821-1402)

참고 1 [대학] 폭력 예방교육 관련 법령

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5조(성폭력 예방교육 등)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,「유아교육법」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,「영유아보육법」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,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,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,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·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,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,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③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및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

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

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·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1.「정부업무평가 기본법」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
2.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
3.「지방공기업법」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
4.「초·중등교육법」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

⑨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⑪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,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4조의3(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) ①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,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,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

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

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·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1.「정부업무평가 기본법」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
2.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
3.「지방공기업법」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
4.「초·중등교육법」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

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⑨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,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